

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9. 11. 화순군수
- 나. 회 부 일 자 : '99. 11. 22
- 다. 상 정 일 자 : '99. 11. 22 (제8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회의)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총무과장 김 종 철

나. 개정사유

- 중앙정부의 명칭 변경과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도 현실에 맞게 자구 수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'제8332부대 5대대장'을 '제6753부대 6대대장'으로 개정(안 제3조 2항)
- '국가안전기획부'를 '국가정보원'으로 개정(안 제3조 2항)
- '내무과장'을 '총무과장'으로 개정(안 제3조 3항)
- '민방위담당간사 : 민방위재난관리과장'은 삭제(안 제3조 3항)
- '문화공보실장'을 '홍보담당'으로 개정(안 제3조 3항)
- '부읍·면장'을 '읍·면장'으로 개정(안 제5조 ①항)
- '부읍·면장'을 '읍·면장'으로 개정(안 제5조 ②항)

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양 정 열)

-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조직명칭 변경과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 명칭도 현실에 맞게 자구 수정키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
-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쳤으며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여부 등 개정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답변요지

‘생 략’

5. 토론요지

‘생 략’

6. 심사결과

‘원안가결’

첨 부 :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1999. 11.

제 출 자 : 화 순 군 수

1. 제안이유

- 중앙정부의 명칭 변경과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도 현실에 맞게 자구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'제8332부대 5대대장'을 '제6753부대 6대대장'으로 개정(안 제3조 2항)
- '국가안전기획부'를 '국가정보원'으로 개정(안 제3조 2항)
- '내무과장'을 '총무과장'으로 개정(안 제3조 3항)
- '민방위담당간사 : 민방위재난관리과장'은 삭제(안 제3조 3항)
- '문화공보실장'을 '홍보담당'으로 개정(안 제3조 3항)
- '부읍·면장'을 '읍·면장'으로 개정(안 제5조 ①항)
- '부읍·면장'을 '읍·면장'으로 개정(안 제5조 ②항)

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2항중 "제8332부대 5대대장"을 "제6753부대 6대대장"으로 하고 "국가 안전기획부"를 "국가정보원"으로 동조 제3항중 "내무과장"을 "총무과장"으로 "민방위담당간사 : 민방위재난관리과장"을 삭제하며, "문화공보실장"을 "홍보담당"으로 한다.

제5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중 "부읍·면장"을 "읍·면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<p>2. 민방위담당간사 : 민방위재난 관리과장</p> <p>3. 심리전담간사 : 문화공보실장</p> <p>제5조 (읍·면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)</p> <p>①읍·면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,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<u>부읍·면장</u>이 된다.</p> <p>②상황실은 실장과 6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, 실장은 <u>부읍·면장</u>이 되며, 분야별 지원반장을 <u>지위·감독</u>한다.</p>	<p>2. 삭 제</p> <p>3. ----- 홍보담당</p> <p>제5조 (읍·면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)</p> <p>①----- ----- ----- 읍·면장-- -----</p> <p>②----- ----- 읍·면장----- -----</p>